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-150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3.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마포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개정(조례 안 제4조)

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내용 세분화(조례 안 제6조~제11조)

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삭제 (조례 제7조)

마포구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방법 삭제 (조례 제7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

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3항

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10. 12.~11. 1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)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의결(2023. 11. 8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의해 설치한 창업보육센터”를 “창업보육센터”로, “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창업보육센터의”를 “이 조례는 창업보육센터의”로, “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대하여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”을 “(운영위원회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
2.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

3.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
4. 예비입주자의 선정
5.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수당 등)”을 “(운영위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된다.
-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해당 분야 공무원
- 2.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제11조로 하며,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의 업

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운영방법)”을 “(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거나,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0조)제2항 중 “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”을 “운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1조)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연장”을 “관련부서에서 평가 후 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와 제161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| <p>제1조(목적) -----<br/>-----<br/>-----제5조에 따라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|
| <p>제2조(설치)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(이하 “창업보육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해 설치한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“라 한다)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| <p>제2조(설치) ①-----<br/>-----<br/><u>중소기업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②<u>창업보육센터</u>-----<br/>----- <u>서울특별</u><br/><u>시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| <p>제3조(적용범위) <u>창업보육센터</u>의 운영, 입주승인,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(이하 “입주자“라 한다)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 | <p>제3조(적용범위) <u>이 조례는 창업보육센터의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대하여 적용</u><br/><u>한다</u></p>   |

제4조(입주대상 등) ①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사업목적과 분야가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의거 고시된 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”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업으로 한다.

1.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
2. 당해 모집공고일 현재,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
②·③ (생략)

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

제4조(입주대상 등) ①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 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
2.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
3.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
4. 예비입주자의 선정
5.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

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
1.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

2.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

3.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

4. 예비입주자의 선정

5.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

6. 기타,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⑦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.

고 판단하는 사항

제7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 (생 략)

제9조(운영방법)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. 다만,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운영, 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해당 분야 공무원
2.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9조(회의)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거나,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(공동운영) ① (생 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의 위탁) ① (생 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공동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 운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.)-----.

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제1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관련부서에서 평가 후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 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2조 ~ 제14조 (생략)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연장-----.

③ 제1항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

제14조 ~ 제16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

<삭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이보은 (☎ 3153-8573)